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간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12.24.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소속 회원사에 적극 알려주시고, 아울러 동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시 끝.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
게임산업협회장,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장,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방위산업
진흥회장, 대한승강기협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승강기설치공사협회의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대한전기협회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장

행정사무관

설민아

기업거래정책 전결 2025. 1. 2.

과장

신용희

협조자

시행 기업거래정책과-6

(2025. 1. 2.)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전화번호 044-200-4953

팩스번호 044-200-4977

/ sma1215@korea.kr

/ 대국민 공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